

충청북도농촌진흥원시험·분석및검정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에 의뢰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검정(이하“시험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농업기술, 작물, 원예, 축산 등과 관련된 물질 또는 물품의 성질, 능력,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그 물질 또는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3. “검정”이라 함은 농업용 기자재의 구조, 성능 및 안전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측정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등의 의뢰) ①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시험등을 하고자하는 대상물품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의 장(이하“진흥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 등에 필요한 대상물품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자가 시험경비를 납부한 날부터 20일 이내
 2. 분석 및 검정의뢰의 경우에는 의뢰신청서를 제출할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자는 자체시험성적서(국내외의 예비시험성적을 포함한다)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신청기간)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분석 및 검정의 의뢰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②시험의 의뢰는 시험목적, 처리기간 및 작물재배시기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기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여름작물은 11월 1일~12월 15일, 겨울 작물은 6월 1일~7월 15일
2.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은 제1호의 시기 및 2월 1일~2월 말일과 8월 1일~8월 31일

제5조(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의뢰신청을 받은 진흥원장은 [별표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①진흥원장은 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만으로 의뢰받은 시험 등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뢰자에게 기계·기구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기구를 제공받은 진흥원장은 시험등이 끝난 즉시 기계·기구물 의뢰자에게 찾아가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③의뢰자로부터 제공받은 기계·기구물 사용하여 시험 등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결과통지서에 그 기계·기구의 명칭, 제조회사, 제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험 등의 거절) ①시험 등의 의뢰를 받은 진흥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절할 수 있다.

1. 시험 등에 인력 및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진흥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대상물품의 시험목적 및 성격상 대상작물 재배시기가 부적합할 때
3. 진흥원이 보유하고있는 시설과 장비 또는 의뢰자가 제공한 기계·기구등으로써 시험 등을 할 수 없을 때
4. 시험 의뢰자가 제11조 제1항에 수수료 및 제2항에 시험 등에 필요한 경비를 규정된 기간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②진흥원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시험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사실과 함께 대상물품을 찾아가도록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지) 진흥원장은 시험등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 후 10일 이내에, 분석 및 검정의 경우에는 분석 및 검정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성적증명서 발급) ①시험 등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진흥원장은 당해 시험등을 의뢰한 자에게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의 성적증명서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등을 의뢰한자의 동의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①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의뢰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시험등의 결과표시를 할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등의 허위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수수료 및 시험등 경비) ①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 등을 의뢰하거나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 의 시험의뢰 수수료는 충청북

도 수입증지로,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외에 [별표 3]의 시험에 필요한 경비를 시험실시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따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시험·분석 및 검정업무 처리절차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한
		농촌진흥원	
시험	신청서작성	접수 : 민원담당부서	여름작물:11월1일~12월15일 겨울작물:6월1일~7월15일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 상시기기와 2월 1일 ~ 2월 말일 8월 1일 ~ 8월 31일
		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계획 심의 : 심 의 회	
	시험경비납부	시험실시 통지 : 민원담당부서	통지 : 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 납부 : 통지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실시 : 해당부서	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결과 평가 : 심 의 회	
	성적서교부	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	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분석 및 검정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 수 : 민원담당부서	접수 : 수시 수수료 납부 : 의뢰시
		분석(검정)실시 : 해당부서	분석(검정) 실제 소요시간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검정)완료 후 즉시

[별표 2] 시험 의뢰 및 분석·검정 수수료 (제11조제1항 관련)

1. 시험 의뢰 수수료

의뢰명	산출기준	수수료(원)
시험등 의뢰 신청	1항목	1,000
시험등 성적증명서 발급신청	1통	500

2.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제11조제1항 관련)

분석항목명	분석기준	기준금액(원)	비고
1. 비료의 성분 및 물리성 분석			
○ 주성분(질소, 인산, 가리, 고토, 망간, 아연, 동, 붕소, 철, 규산, 몰리브덴, 알칼리분)	1점 1성분	8,500	
○ 유해성분(황청산화물, 설파민산, 아질산, 카드뮴, 비소, 납, 수은, 크롬, 염산불용해물)	1점 1성분	9,500	
○ 물리성(분말도)	1점 1성분	5,700	
○ 부산물비료의 미생물상 (세균, 방선균, 효모사상균)	1점 1성분	20,300	
2. 농약잔류량분석(작물, 토양, 수질, 별도 분석)	1약종(동일 성분1시료추가시)	174,000 (34,900)	
3. 오염분석			
○ 작물 (S, F, Cl, 중금속)	1점 1성분	8,700	
○ 수질 (N, COD, SO ₄ , Na, Cl)	1점 1성분	6,300	
○ 토양 (As, Ca, Pb, Cd)	1점 1성분	8,700	
4. 토양물리화학분석			
○ 일반물리성			
- 토 성	1점 1성분	10,000	
- 보수력	1점 1성분	11,000	
○ 토양화학성분(N, P ₂ O ₅ , K, Ca, Mg, Na, pH 기타)	1점 1성분	7,300	
5. 식물체분석			
○ 무기성분(N, P ₂ O ₅ , SiO ₂ , K ₂ O, 기타)	1점 1성분	7,800	
○ 유기성분(당, 전분)	1점 1성분	9,200	
○ 엽록소	1점 1성분	6,300	
○ 실내 발아성 분석	1점	43,500	
6. 농산식품분석			
○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1점 1성분	4,800	
○ 무기성분(Ca, P, K, Na, Fe)	1점 1성분	7,100	

분 석 항 목 명	분 석 기 준	기준금액(원)	비 고
7. 기타성분 분석 (“1” ~ “6”항에서 누락된 성분 및 분석)	1점 1성분	유사항목의 분석 수수료 또는 성분 분석에 소요 되는 경비에 의함	

[별표 3] 시험 경비 (제11조 제2항 관련)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원)	기 타
1. 수도육묘시험 (일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5m ²	100m ²	955,200	
2. 수도육묘시험 (기계이양)	처리 : 3이상 반복 : 5이상 구당면적 : 1상자	15상자	977,200	
3. 수도본답재배 시험(이양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3m ²	100m ²	1,267,100	
4. 수도본답재배 시험(직파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3m ²	100m ²	1,069,000	
5. 전작물재배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36m ²	100m ²	683,900	
6. 특용작물재배 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24m ²	100m ²	825,400	
7. 채소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m ²	100m ²	939,900	
8. 채소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5m ²	100m ²	1,223,900	기온요구시 난방비 별도
9. 채소육묘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7.5m ²	100m ²	682,000	
10. 과수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주수 : 2주이상	100m ²	1,240,300	
11. 과수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주수 : 2주이상	100m ²	1,495,000	

시험구분	시험조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원)	기타
12. 화훼재배시험 (노지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5m ²	100m ²	1,171,000	
13. 화훼재배시험 (시설재배)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7.5m ²	100m ²	1,276,000	
14. 원예산물가공 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처리당소요량:30kg 시험횟수 : 4회	180kg	2,246,000	
15. 원예산물저장 시험	처리 : 2이상 반복 : 3이상 처리당소요량:15kg 시험횟수 : 6회	90kg	2,718,000	
16. 버섯에 관한 시험	처리 : 3이상 반복 : 4이상 구당면적 : 3.3m ²	60m ²	4,660,700	
17. 농약의 약효약 해시험(기준작물) 가. 수도작(벼)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m ²	100m ²	976,000	
나. 전작(콩)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m ²	100m ²	938,000	
다. 특작(땅콩)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m ²	100m ²	1,020,000	
라. 과수(사과)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30m ²	100m ²	1,590,000	
마. 노지채소 (수박)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20m ² (1주)	100m ²	1,110,000	

시 험 구 분	시 험 조 건	산출기준단위	기준금액(원)	기 타
바. 시설채소 (고추)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20m ²	100m ²	1,870,000	
사. 화훼(카네이션)	대조약제:2약제이하 처리 : 3이상 반복 : 3이상 구당면적 : 10m ²	50m ²	1,980,000	
18.농약잔류성시험				
가. 작물잔류성	포장시험 1회 (대사물 추가시)	1농약1성분 (1성분)	3,845,000 (1,620,000)	
나. 토양잔류성	포장·실내시험 각 2 회 (대사물 추가시)	1농약 1성분 (1성분)	6,638,000 (2,760,000)	
	포장시험 2회 (대사물 추가시)	1농약 1성분 (1성분)	3,810,000 (1,380,000)	
	실내시험 2회 (대사물 추가시)	1농약 1성분 (1성분)	3,487,000 (1,860,000)	
19. 기타특수시험	시험설계서에 의함		설계서에 의한 견적가격에 준함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의뢰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검정		처 리 기 관	
		○ 농촌진흥원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번호)	
	③ 주 소 (법인소재지)		
④ 의뢰내용	대 상 물 품 명		
	제조 또는 생산 년 월 일		
	대상물품의 구체적인 내 용		
	시험·분석 또는 검정을 원하는 사항		
⑤ 목 적(용 도)			
충청북도농촌진흥원 시험·분석 및 검정에 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검정)의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귀하 </div>			
첨부서류 : 시험·등의 의뢰서 자체 또는 예비시험 성적서 (국내외의 예비시험서 포함)등 참고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수 수 료
			[별표2] 참조

4002-12민(1)
'83.12.29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쪽)

구분	신청인	처리기관 농촌진흥원	
		처리기관	처리기한
시험	신청서작성	접수 : 민원담당부서	- 여름작물:11월1일~12월15일 - 겨울작물:6월1일~7월15일 - 작물재배시기와 관계없는 시험 : 상기시기와 2월 1일 ~ 2월 28일 8월 1일 ~ 8월 31일
		시험계획검토 : 해당부서	
		시험계획서작성 : 해당부서	
		시험계획 심의 : 심 의 회	
	시험경비납부	시험실시 통지 : 민원담당부서	접수 마감후 15일 이내에 설계심의 실시
		시험실시 : 해당부서	통지 : 시험실시 결정후 즉시 시험경비 납부 : 통지 받은날로부터 10일 이내
		시험결과 평가 : 심 의 회	시험수행 실제 소요 시간
		시험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교부	시험결과 통지 : 해당부서	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
	분석 및 검정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납부	접 수 : 민원담당부서
분석(검정)실시 : 해당부서			분석(검정) 실제 소요시간
성적서 작성 : 해당부서			
성적서 교부		결과통지 : 해당부서	분석(검정)완료 후 즉시

[별지 제2호서식]

발급번호 계 호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결과통지서 <input type="checkbox"/> 검정 </div>			
① 신 청 인	성 명 <small>(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small>		주민등록 번호 <small>(법인의 경우 사업자 번호)</small>
	주 소		
② 의 뢰 내 용	의뢰일		
	대상물품명		
	시험개요		
	용도		
③ 결과			
충청북도농촌진흥원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검정)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충청북도농촌진흥원장 </div>			

4072-14일(1)
'83.12.29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3호서식]

<input type="checkbox"/> 시험 <input type="checkbox"/> 분석 성적서 발급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검정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인	①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사업자번호)	<input type="checkbox"/> 의뢰자 본인 <input type="checkbox"/> 타인
	③ 주 소 (법인소재지)		
④ 대 상 물 품 명			
⑤ (시험·분석및검정) 결과통지서 발급년월일		⑧ 발급번호	제 호
⑥ 시 험 내 용			
⑦ 사용목적(용도)		⑨ 통 수	
<p>충청북도농촌진흥원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분석, 검정)성적서를 발급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 신청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충 청 북 도 농 촌 진 흥 원 장 귀하</p>			
첨부서류 : 신청인이 타인일 경우 시험(분석, 검정)의뢰인의 동의서 1부			수 수 료 [별표2] 참조

4002-15민(1)
'83.12.29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m²)

관계법령발췌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2조(정의) 이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행정사무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민원사항”이라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행위(사실행위·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 가.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추천·시험·검사·검정등의 신청
 - 나. 장부·대장등에의 등록·등재 또는 신고수리의 신청
 - 다.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 라. 법령·제도·절차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청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마.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바. 기타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시험·분석위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장 및 연구소(이하 “시험장”이라한다)에서 위탁받아 행하는 농사에 관한 시험과 분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이라 함은 물질의 성질, 물질의 변화 및 그 물질이 다른 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2. “분석”이라 함은 물질의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험 또는 분석의 위탁) 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시험 또는 분석을 하고자 하는 대상물을 시험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 시기) 분석의 위탁은 수시로 할 수 있으며, 시험의 위탁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업무의 처리) 위탁된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업무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분석결과의 통지) 시험장의 장은 시험 또는 분석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하되, 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 평가후 10일 이내에, 분석의 경우에는 분석이 끝난 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성적증명서의 발급) 시험 또는 분석에 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시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장의 장은 위탁자가 아닌 자가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

하여 시험 또는 분석의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성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와 표시)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또는 분석결과의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등의 정정 또는 취소) 농촌진흥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 또는 표시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하게 하거나 취소하게 할수 있다.

제10조(수수료) ①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는 자는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되, 시험 위탁의 경우에는 시험실시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따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성적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발급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농촌진흥청시험위탁규칙은 이 규칙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에 폐지한다.

③(수수료에 관한 특례) 이 규칙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984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험 또는 분석을 위탁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수입인지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의 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의 위탁자에게 기계·기구·재료 또는 노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기계·기구등의 반환)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기구 및 재료를 제공받은 시험장의 장은 시험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계·기구 및 시험에 사용하고 남은 재료를 찾아가도록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88·11·4>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료관리법】

- 제18조 (품질검사) ①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 그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농업환경 및 토양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하전에 검사들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2년간 이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비료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생산·수입·보관·판매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96·8·8)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비료관리법시행령】

- 제14조 (공업용 비료의 범위등) ①비료의 제조·배합 또는 가공을 위하여 공급되는 비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 비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공업용 또는 사료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비료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용기나 포장의 외부에 표지하여야 한다.
1. 비료의 종류 및 품목
 2. 공업용 또는 사료용에 제공됨을 표시하는 문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4. 제조 또는 수입한 연월일
 5. 목적 이외의 거래는 처벌 받게 됨을 표시하는 문자